

2018년

법인지방소득세 신고·납부안내

12월말 결산 법인의 '17년 귀속 법인소득



□ 안내책자(2p)



법인지방소득세 개요

과세대상

법인소득(각 사업연도 소득, 토지 등 양도소득, 미환류소득, 청산소득)

납세의무자

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

구분	내국법인	외국법인
과세범위	국내·외 소득 모두	국내 원천소득만

과세표준 및 세율

「지방세법」 제103조의20

과세표준	속산법		세법상 계산법
	세율	누진공제액	
2억원 이하	1%	-	과세표준 × 1%
2억원 초과 ~200억원 이하	2%	200만원	200만원 + (2억원 초과 × 2%)
200억원 초과	2.2%	4,200만원	3억9,800만원 + (200억원 초과 × 2.2%)

신고·납부기한

구분	신고·납부 기한
내국법인	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(제103조의23)
연결법인	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(제103조의37)
수정신고, 세무서 결정·경정	법인세 수정신고(세무서 결정·경정 포함)와 동시(제103조의24) ※ '13년도 귀속분까지는 법인세 수정신고일, 결정·경정 고지서의 납부기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·납부

□ 안내책자(3p)



납세지

- 각 사업장 소재지(종업원 수, 건축물 연면적 1:1 기준 안분)
각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비율대로 신고·납부해야 함

〈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계산식〉

$$\left[\left(\frac{\text{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수}}{\text{법인의 총 종업원수}} \right) + \left(\frac{\text{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}}{\text{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}} \right) \right] \div 2$$

- 안분신고 관련 안내

- 각사업장** 인적 설비(종업원) 또는 물적 설비(건축물 등)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
- 종업원**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국외근무자는 제외
- 건축물**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

신고시 제출서류

분류	종류
신고서	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(43호)
첨부서류	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43호의2)
	안분명세서(44호의6)
	공제(감면)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(43호의3)
	가산세액 계산서(43호의4)
	특별징수세액명세서(43호의5)
	재무상태표
	포괄손익계산서
	이익잉여금처분(결손금처리)계산서
	현금흐름표 →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
	소급공제 환급신청서(43호의9) → 해당 법인만

※ 특별징수세액을 본점 소재 자치단체에서 일괄 환급 신청시 특별징수명세서(42호의4) 제출 필요

□ 안내책자(4p)



법인지방소득세 개요



법인지방소득세 계산구조(지방세법 제103조의2)

구분	내용
과세표준	• 「법인세법」에 따른 과세표준과 동일
(×) 세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표준세율(1%~2.2%) • 토지 등 양도소득 : 1%(미등기 4%), 미환류소득 : 1% •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: 0.9%(20억 초과 1.2%)
산출세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+)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• (+)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
(-) 공제 · 감면세액	•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감면 규정 없음 (단, 조례로 정한 경우 적용)
(+) 가산세	•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계산한 가산세
(+) 추가납부세액	• 법인세 추가납부세액의 10%
총부담세액	
(-) 기납부세액	• 수시부과세액, 특별징수납부세액 등
(±)경정 · 수정신고 등 가감액	• '13년 이전 귀속분에 대한 경정 · 수정신고로 인해 추가납부 또는 환급되는 세액(당초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되는 경우)
차감납부할세액	



□ 안내책자(5p)

특별징수세액(기납부세액) 안분방법



총부담세액 ≥ 특별징수세액(기납부세액)

기납부세액을 사업장별로 안분

사례

총부담세액 10,000원, 특별징수세액 4,000원,
본점 A(70%), 지점 B(30%), 특별징수지 C, D



구분	사업장		특별징수지	
	A지자체(70%)	B지자체(30%)	C지자체	D지자체
총부담세액	10,000원		2,000원	2,000원
안분세액	7,000원	3,000원		
기납부세액	총액 4,000원			
	안분	2,800원	1,200원	
차감납부할세액	4,200원	1,800원		



□ 안내책자(6p)



특별징수세액(기납부세액) 안분방법



총부담세액 < 특별징수세액(기납부세액)

총부담세액에 상당하는 기납부세액은 안분, 초과분은 본점가산

사례

총부담세액 10,000원, 특별징수세액 31,000원,
본점 A(70%), 지점 B(30%), 특별징수지 C, D



구분	사업장		특별징수지	
	A지자체(70%)	B지자체(30%)	C지자체	D지자체
총부담세액	10,000원		10,000원	21,000원
안분세액	7,000원	3,000원		
기납부세액	총액 31,000원			
	안분대상액 10,000원(총부담세액 상당액)			
	안분 7,000원 3,000원			
	본점가산 21,000원 (31,000원-10,000원)			
소계 28,000원 3,000원				
차감납부할세액	-21,000원			0

□ 안내책자(7p)

신고·납부시 유의사항



✔ **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·납부**

- 동일 특·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(區)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일괄 신고·납부
 - ※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을 경우 ①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, ②안분율이 가장 큰 사업장
- 안분 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

✔ **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**

- 사업장이 여러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「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」를 자치단체마다 각각 제출
- 하나의 자치단체(시·군·구)에만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안분명세서 제출 불필요
-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,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
 - ※ 「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첨부서류(재무제표, 세무조정계산서) 제출 면제

✔ **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·감면은 없음**

- 법인세를 세액공제 또는 감면 받은 법인도 법인지방소득세는 「지방세법」 및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 따라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 불가 (단, 조례로 정한 경우 적용)
- 다만,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 가능(0.9%, 1.2%)

✔ **수정신고는 자치단체 결정·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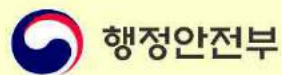
- '14년 이후 사업연도 귀속분부터는 법인세 수정신고시 법인지방소득세도 자치단체에 수정신고를 해야함
 - ※ '13년도 귀속분까지는 법인세 수정신고일, 결정·경정 고지서의 납부기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인세 납부세액(가산세 포함) 10%를 신고납부

✔ **위택스(www.wetax.go.kr)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가능**

- 지방소득세 전자신고 등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 참고

□ 안내책자(8p)

2018년
법인지방소득세
신고·납부안내



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(세종로)

행정안전부 콜센터 02-2100-3399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www.mois.go.kr